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-006호

2024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

세종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을 위한 「2024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」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에 앞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1월

(재)세종테크노파크원장

1 개요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4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
○ 사업목적 : 지역특화소재*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

※ 지역특화소재 : 지역의 전통, 역사, 문화, 인물·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소재

○ 지원규모 : 2개 과제 / 과제당 100백만원~200백원 지급(총사업비 330백만원 이내)

○ 전담기관 : 한국콘텐츠진흥원

○ 수행기관 : (재)세종테크노파크

2 주요내용

□ 목적 및 대상

○ 목　　적

- 「2024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」과 관련하여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의 수요 파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
- 사업공고 이전 지역내 콘텐츠기업 대상 사업 홍보 및 안내

○ 대　　상 : 세종지역 내 콘텐츠 기업　**※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**

○ 조사항목 :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장르 및 세부 개발내용, 소요예산 등

□ 주요 사업내용(안)

○ **사업내용 : 지역특화소재*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개발 지원**

※ 지역특화소재 : 지역의 전통, 역사, 문화, 인물·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소재

○ **지원규모 : 2개 과제 / 과제당 100백만원~200백원 지급(총사업비 330백만원 이내)**

○ 지원분야 : 만화(웹툰), 음악, 애니메이션, 방송영상(독립제작자 대상), 캐릭터, 실감형콘텐츠(AR·VR·홀로그램·메타버스 등), 융복합, 게임, 공연 등

※ 콘텐츠 전 장르 가능(장르 제한 없음)

○ **지원자격 :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"문화산업"을 영위하는 세종특별지치시 소재 콘텐츠 기업(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)**

※ 컨소시엄 가능 :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

*** (주관기업) 세종 소재 콘텐츠 기업**

*** (참여기업) 역외기업(서울포함),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 (선택)**

* 참여기업으로 한해 대기업 참가가능(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, 현금 자부담 매칭 20% 이상, 유통판로확보서 제출 의무)

※ 부동산업 등 지원불가, **비영리기업 지원 불가**

※ 주관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에서 제재사유 발생시 사업 지원 불가

□ 추진 일정

구분	추진일정	내용
수요조사 공고	'24.1.24.~2.7.	○ 수요조사 공고(홈페이지 등) 및 접수
⇩		
수요조사 내용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	2월 중순	○ 수요조사 내용 검토를 통한 지원과제 발굴 ○ 세부 사업 계획 수립 ※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반드시 **본 공고 시 신청·접수하여야 하며 심사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**
⇩		
지원사업 설명회 개최	2월 말	○ 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통합설명회 개최 ※ 2월 22일(목) 예정 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⇩		
지원사업 공고	2월 말~3월 초	○ 지원사업 사업공고(홈페이지 등) ※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※ 수요조사 참여 기업 대상 SMS 안내 예정
⇩		
지원사업 신청서 접수	3월	○ 사업 신청서 접수(약 1개월 예정) ※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⇩		
지원과제 선정	3월 말	○ 선정평가를 통환 지원 과제 선정(**발표 평가**)
⇩		
심의·조정위원회 개최	4월 중순	○ 선정과제에 대상 평가 의견 반영 내용 검토 및 사업비 심의·조정
⇩		
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	4월 말~5월 초	○ 세종테크노파크-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○ 1차 지원금 지급 ○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평가, 현장점검 진행
⇩		
사업중간평가 및 현장점검	8월 중순~말	○ 사업 추진 실적 중간 점검 추진 ○ 사업체 현장 점검 진행
⇩		
사업 성과물 점검	11월 말	○ 사업 최종평가 진행
⇩		
사업비 정산	12월~1월	○ 사업비 정산 보고

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 : 2024. 1. 24(수) ~ 2024. 2. 7(수) 18:00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(jin56@sjtp.or.kr)

□ 제출서류 : 수요조사서(2장 이내 작성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□ 사업문의 : 디지털융합센터 메타버스비즈니스팀 이희진 전임연구원
(044-850-8342, jin56@sjtp.or.kr)

4 유의사항

□ 수요조사 참여 시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2024년 해당사업의 수요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

○ 제출된 서류는 수요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, **과제 선정 등의 효력을 가지지 않음**

※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반드시 **본 공고 시 신청·접수하여야 하며 심사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**

○ 사업 공고시 사업 주요 내용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참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'문화산업' 분야

■ **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· 개발 · 제작 · 생산 · 유통 ·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가. 영화 ·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나. 음악 · 게임과 관련된 산업
다. 출판 · 인쇄 ·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바. 만화 · 캐릭터 · 애니메이션 · 에듀테인먼트 · 모바일문화콘텐츠 · 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 · 광고 · 공연 · 미술품 ·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· 가공 · 개발 · 제작 · 생산 · 저장 · 검색 ·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· 박람회 ·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 · 박람회 ·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